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12. 17 선고 2024가단5419200 판결 [구상금채권 등 청구의 독촉사건]

전 문

원고 1. 주식회사 A

2. 주식회사 B

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의

담당변호사 김철환

피고 C

변론 종결 2024. 11. 26.

판결 선고 2024. 12. 17.

주 문

1. 피고는

가.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40,4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. 12. 1.부터 2024. 9. 9.까지는 연 6.01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,

나. 원고 주식회사 B에게 180,258,351원과 이에 대하여 2024. 5. 31.부터 2024. 9. 9.까지는 연 6%,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

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피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(단, 채권자는 원고,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)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,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이문세

별지